

다산신도시 센트럴 에일린의 뜰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B-2블록
- 공급규모 : 분양주택 총 759세대 (지하2층, 지상30층, 5개동)
- 공급내역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공급세대수		1층 우선 배정 세대 (최저층 포함)	입주 예정시기
	계	기관추천		
84A	399	39	9	2019년 05월 예정
84B	215	21	7	
84C	145	14	4	
계	759	74	20	

■ 일정 계획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6. 09. 30(금)	일간신문 및 다산신도시 센트럴 에일린의 뜰 홈페이지 http://www.dasan-eileen.co.kr/
• 견본주택 개관	2016. 09. 30(금)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데동 250
• 접수일자	2016. 10. 05(수) 10:00 ~ 15:00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당첨자발표	2016. 10. 05(수) 17:00	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 동호수발표	2016. 10. 13(목)	당사 견본주택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기관추천 특별공급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이주대책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등)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30)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음)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30)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신청하고자 하는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 별표1의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하남시 / 경기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른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하나,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당사에서 임의로 추첨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

III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재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9.30)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서 (각 1통)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당기관 추천서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특별공급신청서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서약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이주대책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제3자 대리신청서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건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신청자 인감도장	
대리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 인장

IV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6.10.05.(수) 예정]에 견본주택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250)에서 신청접수처 없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 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6.09.30(금)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san-eileen.co.kr/>) 및 견본주택, 팸플릿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시행일 2015년 2월 27일(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 완화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dasan-eileen.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250번지
- 분양문의 : ☎ 1522-4777